

1. 개정이유 및 주요내용

삼차원프린팅산업 진흥법 시행령 개정안의 삼차원프린팅서비스사업 신고 요건 변경 사항 등을 반영하기 위하여 별지 서식의 삼차원프린팅서비스사업 신고서를 개정하려는 것임.

2. 참고사항

가. 관계법령 : 생 략

나. 예산조치 : 별도조치 필요 없음

다. 합 의 : 해당없음

라. 기 타 : 1) 신·구조문대비표, 별첨

2) 입법예고(9999. 12. 31. ~ 12. 31.) 결과, 특기할 사항
없음

3) 행정규제 : 규제개혁위원회와 협의 결과, 이견 없음
- 규제 신설·폐지 등, 없음

삼차원프린팅산업 진흥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

삼차원프린팅산업 진흥법 시행규칙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.

별지 제1호서식 제3항 중 “사업자”를 “대표자”로 하고, 같은 서식 제10항, 제11항, 제13항, 제14항을 다음과 같이 하며, 제15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.

⑩ 근로자 수	대표자를 포함한 근로자 수 명 (조형물 제작 종업원 수(대표자 제외): 명)		
⑪ 삼차원프린팅 장비 현황 (총 대) 보유 대 / 임대 대 / 공동사용 대	⑫ 기업 규모별 유형 [] 중소기업 [] 중견기업 [] 대기업		
⑬ 변경 사항	[] 대표자의 성명 [] 사업자의 상호 [] 사무실의 주소 및 연락처 [] 대표자의 연락처		
	변경 전		
	변경 후		
⑭ 담당자	성명	부서	직책
	전화번호 또는 휴대폰	전자우편	
⑮ 대표자	휴대폰	전자우편	

위 모든 내용은 사실대로 작성하였으며, 향후 거짓 작성으로 인한 모든 불이익을 감수할 것을 서약하고, 「삼차원프린팅산업 진흥법」 제15조제1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8조제1항·제9조제1항에 따라 위와 같이 삼차원프린팅서비스사업을 신고(변경신고)합니다.

년 월 일

신고인(대표자)

(서명 또는 인)

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 귀하

부 칙

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.

신 · 구조문대비표

현 행	개 정 안